2020년 보건소 자체종합감사 결과

1 감사개요

○ 기　　간 : 2020. 8. 31.(월) ~ 9. 4.(금)(5일간)

○ 감사범위 : 2017. 4. ~ 2020. 6.까지 처리한 업무일체

○ 감사반 편성 : 기획감사관외 4명

○ 감사중점

- 코로나19 상황 대응 등 보건소 업무 전반
- 출장여비 부당수령 등 복무 및 공직기강 관련 분야
- 늑장행정, 각종 지도·점검 미이행 등 소극적 업무처리 형태
- 각종 공사, 보조금 분야 및 민원처리실태 추진 적정 여부
- 회계질서 문란 및 편법·변태 운영사례 집중 감사 등

2 감사결과

❑ 총 지적건수 : 10건

○ 행정상 및 재정상 조치

부 서 명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계	주의	시정	권고	건	금액(원)
보 건 소	**10**	9	1	-	1	1,451,040

○ 신분상 조치 : 해당없음

❑ 처분내용

연번	제 목	감사결과 처분요구			비고
		행정상	재정상(원)	신분상	
계	**10건**	**주의(9) 시정(1)**	**1,451,040**	**-**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신고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소홀	**주의**	-	-	
2	의료용폐기물 및 폐수 처리용역 예산 비목(공공운영비) 편성 부적정	**주의**	-	-	
3	안마시술소·안마원 지도 및 점검 소홀	**주의**	-	-	
4	기간제 근로자 채용업무 추진 소홀(성범죄 경력 조회 미실시)	**주의**	-	-	
5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추진 소홀	**주의**	-	-	
6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부적정	**주의**	-	-	
7	2인견적 물품 수의계약 입찰참가자격 안내 공고 부적정	**주의**	-	-	
8	하자보수 보증기간 설정 부적정	**주의**	-	-	
9	소독의무 대상시설 관리 소홀	**주의**	-	-	
10	위험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시정**	1,451,040	-	회수

감사결과 처분서(1)

【제　　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신고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소홀

【현　　황】

○ 관련근거

- 지방세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 현　　황

민원사무명	신청인	신고처리일	등록면허세 납부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신고	◉◉◉◉치과(○○○)	2019.01.21.	2019.08.07.
	◍◍◍◍◍◍의원(○○○)	2019.01.28.	2019.07.29.

【지적내용】

○ 「지방세법」 제35조에 따르면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별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에서는 「의료법」 제37조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운영 신고'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 또한, 같은 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52조(면허 시의 납세확인)에서는 면허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었음을 확인하고 면허증서 발급대장의 비고란에 등록면허세의 납부처·납부금액·납부일 및 면허 종별 등을 적은 후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 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런데 증평군보건소 ▤▤▤▤▤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설치, 사용, 재상용)신고를 업무 처리하면서 현황〔표〕와 같이 2019년도 2건의 사용 신고에 대해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개설 신고필증을 교부하는 등 관련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분내용】

○ 기관·부서명 : 보건소

○ 행정상 처분 : 주 의

- 내 용

・보건소에서는 등록면허세가 미납되거나 납부가 지연되지 않도록 납부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교부하는 등 민원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해당 없음

○ 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

감사결과 처분서(2)

【제　　목】 의료용폐기물 및 폐수 처리용역 예산 비목(공공운영비) 편성 부적정

【현　　황】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현　　황

[표] 의료폐기물 및 폐수 처리용역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단위 : 천원)

회계년도	예산편성 내역				지출내역		
	세부사업명	통계목명	산출근거명	예산액	적요	지출액	채권자
2017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의료용 폐기물 처리 수수료 / 폐수처리 수수료	3,780	의료용 폐기물 / 폐수처리 수수료 지급	3,230	[redacted], ㈜◎◎
2018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의료용 폐기물 처리 수수료 / 폐수처리 수수료	3,780	의료용 폐기물 / 폐수처리 수수료 지급	2,827	[redacted], ㈜◎◎
2019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의료용 폐기물 처리 수수료 / 폐수처리 수수료	4,360	의료용 폐기물 / 폐수처리 수수료 지급	3,604	[redacted]
2020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의료용 폐기물 처리 수수료 / 폐수처리 수수료	4,360	의료용 폐기물 / 폐수처리 수수료 지급	1,722	[redacted]

【지적내용】

○ 보건소에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의료폐기물 및 폐수 처리용역 사업비를 공공운영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시설장비 유지관리의 용역비는 공공운영비(시설장비유지비) 예산으로 집행하고, 방역수수료 등 소규모 용역에 대한 역무대가는 사무관리비(일반수용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되어 있다.

○ 따라서 보건소에서는 의료폐기물 및 폐수 처리용역 시행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동 용역이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소규모 용역이므로 공공운영비가 아니라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편성 및 집행해야 했다.

○ 그런데도 보건소에서는 2017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매년 의료폐기물 처리용역을 등을 시행하면서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여야 함에도 현황 [표]와 같이 공공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였다.

○ 결과적으로 보건소에서는 세출예산 편성·집행에 있어 과목별 예산 편성·집행의 합목적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처분내용】

○ 기관·부서명 : 보건소

○ 행정상 처분 : 주 의

- 내 용

·보건소에서는 의료폐기물 및 폐수 처리용역 예산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해당 없음

○ 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

감사결과 처분서(3)

【제　　목】 안마시술소·안마원 지도 및 점검 소홀

【현　　황】

○ 관련근거 :「안마사에 관한 규칙」

○ 안마시술소 미점검 내역

(단위 : 명)

연번	연　도	대상	점검회수	점검결과	비 고
계					
1	2017년	1개소	1회	적합	
2	2018년	1개소	1회	적합	
3	2019년	1개소	1회	적합	

【지적내용】

○「안마사에 관한 규칙」제8조(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지도·점검) 제1항에 따라 군수는 매 반기(半期) 1회 이상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이 시설 기준에 맞는지와 준수 사항을 지키고 있는지를 지도·점검하도록 하여야 하고, 제3항에서는 지도·점검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지도·점검 결과를 안마시술소 등 지도·점검기록부에 기록하여 그 기록부를 해당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에 갖추어 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보건소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안마시술소와 안마원에 대하여 매 반기 1회 이상 시설 기준과 준수 사항을 점검하였어야 하나 위 현황과 같이 2017년 ~ 2019년간 지도·점검을 연 1회만 실시하는 등 안마시술소·안마원 지도 및 점검업무를 소홀히 추진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기관·부서명 : 보건소

○ 행정상 처분 : 주 의

- 내 용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해당 없음

○ 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

감사결과 처분서(4)

【제　　목】 기간제 근로자 채용업무 추진 소홀(성범죄 경력 조회 미실시)

【현　　황】

○ 관련근거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의료법」 및 「지역보건법」

○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 성범죄 경력 조회 미실시 내역

연번	사업명	채용인원	근로기간	직　종	비 고
1	방문건강 관리사업	2명	2017.10.10.~2019.09.30.	간호사	
2	국가 예방접종 실시	1명	2017.05.01.~2017.12.31.	간호사	
3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1명	2018.05.14.~2018.10.31.	간호사	
4	방문건강 관리사업	1명	2018.06.11.~2019.10.11.	간호사	
5	국가 예방접종 실시	1명	2018.01.02.~2019.12.31.	간호사	
6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1명	2020.06.15.~2020.12.31.	간호사	

【지적내용】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서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각 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12호에 그 대상을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이 경우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2조(의료인) 제1항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

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고 하고 있음. 또한,「지역보건법」제31조(「의료법」에 대한 특례)에서는 보건소·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는「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5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제25조(성범죄의 경력 조회) 제1항에서 성범죄의 경력조회를 요청하려는 자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보건소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로 간호사를 채용할 때 경찰관서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조회를 요청하였어야 했으나 위와 같이 2017년 10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기간제 근로자(간호사)를 채용하면서 성범죄의 경력조회를 하지 않는 등 기간제 근로자 채용 업무를 소홀히 추진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기관·부서명 : 보건소

○ 행정상 처분 : 주 의

- 내 용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해당 없음

○ 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

감사결과 처분서(5)

【제　　목】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추진 소홀

【현　　황】

○ 관련근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질병관리본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연 처리 현황

연번	환자명	병 명	신청일	처리기한	결정통보일 (처리일)	지연사유 (통보여부)
계(19건)			-	-	-	-
1	◍◍◍	뇌전증을 동반한 레녹스가스토증후군	2018.01.12.	2018.02.26.	2018.03.08.	해당없음(부)
2	●●●	만성신장기능상실	2018.04.12.	2018.05.25.	2018.06.20.	〃
3	◒◒◒	모야모야병	2018.04.16.	2018.05.29.	2018.06.20.	〃
4	◐◐◐	만성신장기능상실	2018.04.16.	2018.05.29.	2018.06.20.	〃
5	▤▤▤	혈우병	2018.04.19.	2018.06.01.	2018.06.20.	〃
6	▥▥▥	만성신장병	2018.08.08.	2018.09.19.	2018.09.20.	〃
7	▦▦▦	신생아호흡곤란증후군	2018.10.22.	2018.11.30.	2018.12.13.	〃
8	▧▧▧	양대혈관우심실기시증	2018.10.22.	2018.11.30.	2018.12.13.	〃
9	▨▨▨	확장성 심장근육병증	2018.10.26.	2018.12.06.	2018.12.13.	〃
10	▩▩▩	만성신장병	2019.04.05.	2019.05.17.	2019.05.20.	〃
11	◇◇◇	모야모야병	2019.05.10.	2019.06.21.	2019.06.23.	〃
12	◉◉◉	결절성경화증	2019.06.24.	2019.08.02.	2019.08.05.	〃
13	◈◈◈	만성신장병	2019.08.20.	2019.10.02.	2019.10.07.	〃
14	◪◪◪	신생아호흡곤란증후군	2019.09.10.	2019.10.25.	2019.12.06.	〃
15	◫◫◫	만성신장병	2019.09.25.	2019.11.07.	2019.11.12.	〃
16	◩◩◩	만성신부전	2019.09.16.	2019.10.29.	2019.11.25.	〃
17	◶◶◶	만성신부전	2019.09.25.	2019.11.07.	2019.11.22.	〃
18	◔◔◔	혈우병	2019.10.07.	2019.11.18.	2019.11.19.	〃
19	◰◰◰	21삼염색체증, 감수분열비분리	2019.10.07.	2019.11.18.	2019.12.02.	〃

【지적내용】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여부 결정은 지원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에 시일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유[1]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제2항에 따르면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단위로 계산하고 첫 날을 삽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20조(관계 기관·부서 간의 협조) 제1항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는 민원을 처리할 때 관계 기관·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을 접수한 후 지체 없이 그 민원의 처리기한 내에서 회신기간을 정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기관·부서는 그 회신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같은 법 시행령」제21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제1항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2항에서는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보건소에서는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신청서류를 접수 받으면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처리를 하거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30일 이내에 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문서로 그 사유를 통지하였어야 함.

○ 그러나 보건소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1) 특별한 사유에는 부양의무자의 조사, 신청자(환자)의 자료 제출 지연 등이 해당됨

추진하면서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분명하지 않았음에도 30일을 초과하여 처리하였으며, 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한 민원인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 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기관·부서명 : 보건소

○ 행정상 처분 : 주 의

- 내 용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해당 없음

○ 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

감사결과 처분서(6)

【제　　목】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부적정

【현　　황】

○ 건　　명 : 의료기관의 휴업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 대 상 자 : ▤▤▤(◐◐◐◐◐◐◐◐재단 ◲◲◲◲◲◲)

○ 부과금액 : 금400,000원

금 액		산정방법	개별법령 감경 내용	비 고
당초 (산정)	감경 (부과)			
500천원	400천원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 20%	『의료법』 시행령 별표2의 1. 일반기준 나.에 따라 개별기준[2]에 따른 과태료금액의 2분의 1 감경적용 가능	

○ 감경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른 사전납부 감경 통지

※『의료법』에 따른 감경과 사전납부의 감경이 중복 가능함에도 미통지

【지적내용】

○ 『의료법』 제40조(폐업 · 휴업의 신고)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법 제92조(과태료) 제3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법 시행령 제45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른 별표2에서는 과태료의 감경 규정으로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개별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2) 1.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5.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우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감경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과태료 부과처분의 관련법령인『질서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서는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3]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보건소에서 추진한 의료기관 휴업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 전 사전통지는 개별법령에 따른 감경과 자진납부에 대한 감경을 중복하여 감경할[4]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의견제출 기간 내 중복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는 사항을 통지해야 함에도 개별법령 감경사항 이외 자진납부의 감경사항만 통지하는 등 관련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기관·부서명 : 보건소

○ 행정상 처분 : 주 의

- 내 용

・보건소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해당 없음

○ 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

---

3) 1.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법 제18조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6.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질서행위규제법』해설집(법무부) 77쪽 (5) 자진납부 감경을 하는 경우 개별법 상의 과태료 감경사유와의 관계에 따라 자진납부 감경과 개별법 상의 과태료 감경 규정 또한 중복이 가능하다.

감사결과 처분서(7)

【제　　목】 2인견적 물품 수의계약 입찰참가자격 안내 공고 부적정

【현　　황】

(단위 : 천원)

건　　명	예정 금액	참가자격	소기업·소상공인 확인 여부	비 고
2018년 ■■■■■■ 및 ▥▥▥▥▥▥▥▥▥▥▥▥ 의약품 구매	44,600	영업장 소재지 충청북도, 의약품판매업 허가	공고내용 없음	
2018년 ◉◉◉◉◉ 구매	45,000	영업장 소재지 충청북도, 의약품판매업 허가	공고내용 없음	

※ 감사자료 제출 재구성

【지적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1항제5호에 따라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계약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보건소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8년 ◉◉◉◉◉ 구매 외 1건에 대한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를 함에 있어 입찰참가자격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채 공고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기관·부서명 : 보건소

○ 행정상 처분 : 주 의

- 내 용

・보건소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해당 없음

○ 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

감사결과 처분서(8)

【제　　목】 하자보수 보증기간 설정 부적정

【현　　황】

○ 사 업 명 : 보건소 건물 ◉◉◉◉공사
○ 사 업 비 : 금9,500천원
○ 사업기간 : 2018. 11. 9. ~ 2018. 11. 29.
○ 사업내용 : 보건소 건물 ◉◉◉◉
○ 검 사 일 : 2018. 11. 29.
○ 하자보증기간 : 2018. 12. 12. ~ 2021. 12. 11.

【지적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 및 제21조(하자보수보증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법 시행령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제1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제64조제1항에[5]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함.

○ 그러나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건물 ◉◉◉◉공사』 완료에 따른 대가지급을 추진함에 있어 도급계약 체결 시 산정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5)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년)에 따라 하자보수 보증서 발급 시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보증 기간을 산정해야 함에도 위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13일 지체하여 부적정하게 산정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기관·부서명 : 보건소

○ 행정상 처분 : 주 의

- 내 용

・보건소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해당 없음

○ 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

감사결과 처분서(9)

【제　　목】 소독의무 대상시설 관리 소홀

【현　　황】

○ 관련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표> 대상시설 의무소독실시 여부 및 관리 현황

(단위: 개소)

연 도	대상시설	의무소독 위반시설						처분 여부
		계	숙박 시설	공동 주택	병원	식품접객 업소	기타	
2017	92	4	1	-	1	-	2	부
2018	95	3	-	2	-	1	-	부
2019	90	16*	5	2	-	2	7	부
2020	95	실시여부 미파악						부

* 실시여부 미파악시설 포함

【지적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소독 의무)에 따르면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같은 법 시행규칙」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별표 7의 소독횟수 기준)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 하여야 하며,

○「같은 법」제83조(과태료) 및「같은 법 시행령」제33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소독을 하지 않은 자에게는 과태료(1회 위반시 50만원, 2회 이상 위반시 100만원) 부과 처분을 하여야 한다.

○ 증평군 보건소에서는 매년 1월 관내 소독의무 대상시설을 지정하여 법정 소독횟수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할 예정임을 통보하고 있다. 이에 보건소에서는 소독의무 대상시설에 대하여 소독기준에 따른 소독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표>와 같이 2017년~2019년 기간 내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시설 또는 연간 소독횟수를 준수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및 별도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더러,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감사일 현재까지 소독의무 대상시설의 소독실시 여부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는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의무 대상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분내용】

○ 기관·부서명 : 보건소

○ 행정상 처분 : 주 의

- 내 용

・보건소에서는 의무소독대상시설의 소독실시여부를 확인하시어 위반시설 발생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무소독시설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해당 없음

○ 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

감사결과 처분서(10)

【제　　목】 위험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현　　황】

○ 관련법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위험근무수당 지급 현황 : 별첨 참조

【지적내용】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함) 제13조에 따르면 공무원으로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7의 지급 구분 및 별표 8의 등급별 구분에 의하여 위험근무수당(갑종 6만원, 을종 5만원, 병종 4만원)을 지급한다.

○ 또한,「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자가 있는 기관에서는 대상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직무의 위험성, 상시 종사 여부, 직접 종사 여부를 판단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직무의 위험성"은 별표 8의 각 부문과 등급에서 정한 내용에 따르며, "상시 종사"란 공무원이 위험한 직무를 일정기간 또는 계속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고(일시적·간헐적으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없음), "직접 종사"란 해당 기관 혹은 부서 내에서도 업무 분장 상에 있는 위험한 작업 환경과 장소에 직접 노출되어 **위험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며, 위험근무수당은 위험한 업무에 상시 종사함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실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대해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 이에 위험근무수당 지급시에는 영 별표 8의 등급별 구분표에 따라 방역·보건관계 기관 등에서 방사선을 이용하는 업무, 결핵·한센병·감염병 또는 정신병 치료기관에서 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을 을종으로 구분하고, 결핵·한센병·감염병 환자를 직접 치료하거나 간호하지는 않지만 상시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오염이나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병종으로 구분하여 그에 해당하는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따라서 증평군 보건소에서는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자의 담당업무에 대하여 직무의 위험성, 상시 종사 여부, 직접 종사 여부를 면밀히 판단하여 등급별 지급 구분에 따라 적정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별첨] 과 같이 방사선을 이용하거나, 결핵·한센병·감염병 치료업무 등에 상시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근무자 10명에게 1,451천원의 위험근무수당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분내용】

○ 기관·부서명 : 보건소

○ 행정상 처분 : 시 정

- 내 용

·보건소에서는 소속 근무자에게 과다 지급된 위험근무수당을 즉시 회수 조치하시고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어 향후 각종 수당에 대하여도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하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회 수(1,451,040원)

○ 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

[별첨] 위험근무수당 과다지급 현황

(단위 : 원)

연 도	직 급	성명	과다지급액 (회수대상액)	비고
2016	◆◆◆급	▩▩▩	90,000	
	◆◆◆급	▧▧▧	20,000	
	계		110,000	
2017	◆◆◆급	▩▩▩	60,000	
	◆◆◆급	▧▧▧	60,000	
	♣♣♣급	▦▦▦	90,000	
	◆◆◆급	▨▨▨	57,500	
	♣♣♣급	◎◎◎	5,670	
	☆☆☆급	◴◴◴	30,000	
	◆◆◆급	◈◈◈	90,000	
	계		393,170	
2018	◆◆◆급	▧▧▧	120,000	
	◆◆◆급	◈◈◈	120,000	
	♣♣♣급	▦▦▦	120,000	
	◆◆◆급	▨▨▨	51,620	
	◆◆◆급	◈◈◈	120,000	
	계		531,620	
2019	◆◆◆급	◈◈◈	100,000	
	♣♣♣급	◎◎◎	100,000	
	◆◆◆급	◈◈◈	100,000	
	◆◆◆급	▨▨▨	16,250	
	☆☆☆급	▣▣▣	100,000	
	계		416,250	
총 계			**1,451,040**	